

2026년 『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&D⁺(연구개발)사업』 지원사업 (1차) 모집공고

지역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「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&D⁺사업」 지원사업 (1차)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3월 9일
(재)전북테크노파크원장

1

지원개요

□ 사업목적

- 도내 혁신성장산업 집중육성을 위하여 연관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상용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

□ 사업내용

사업명	•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&D ⁺ 사업
사업내용	• 혁신성장산업 분야 도내기업의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
지원규모	• 20개사 내외
지원유형	① 자유공모형 : 미래 新 성장산업분야 내 자유주제로 신청 ② 구매조건부 : 미래 新 성장산업분야 내 자유주제로 신청하되, 구매확약서 제출 필수 ③ 투자유치형 : 미래 新 성장산업 분야 내 자유주제로 신청하되, 투자유치계약서 또는 MOU 제출 필수
지원분야	• 新 성장산업산업 미래 10개 분야
특이사항	• 과제당 1명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
관리기관	• (재)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단 R&D지원팀

2

지원유형별 지원내용

구 분	투자유치	구매조건부	자유공모형
개요	투자유치 계약 또는 MOU실시 후 도내에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고도화, 기술개발, 공장개발 등 지원	대기업 중견기업, 자체 등으로부터 지원금 이상의 구매확약서(P/O)를 받은 기업의 R&D지원을 통한 상용화 촉진 지원	기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
작성 방법	<u>新혁신성장산업 분야를 자유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되, 투자유치 계약서 또는 MOU 문서 및 지원금액 이상 투자 증빙자료 제출 필수</u>	<u>新혁신성장산업 분야를 자유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되, 구매확약서(지원금액 이상) 제출 필수</u>	<u>新혁신성장산업 분야를 자유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</u>
지원금액 (과제당)	120백만원 이내	120백만원 이내	100백만원 이내
지원기간	1년 (12개월)		
신청자격	[[참고1]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참조]		
추진방식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업 주도 컨소시엄 또는 기업 단독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 <p>1) 기업주도 컨소시엄 방식 : 주관 (도내소재 기업, 연구전담부서 이상 보유) + 참여(도내 소재 기업, 도내소재 대학, 연구기관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관 + 참여1 일 때, 도비지원금 비율은 주관 60% 이상, 참여 40% 이하 - 주관 + 참여1 + 참여2 일 때, 도비지원금 비율은 주관 40% 이상, 참여 각각 30% 이하 <p>2) 기업 단독 방식 : 주관 (공고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 제외)를 보유한 기업)</p> </div>		
도비지원준	총사업비의 80%이내		
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	기업주도 컨소시엄	<p>-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은 총사업비의 20%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%이상</p> <p>예) 지원금 100,000천원(80%) + 민간부담 25,000천원(20%) = 총사업비 125,000천원(100%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민간부담금 = 현물 22,500천원(90%) + 현금 2,500천원(10%)</p>	
	기업 단독	<p>-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은 총사업비의 20%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%이상</p> <p>예) 지원금 100,000천원(80%) + 민간부담 25,000천원(20%) = 총사업비 125,000천원(100%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민간부담금 = 현물 20,000천원(80%) + 현금 5,000천원(20%)</p>	
기술료 징수 (정액기술료)	<p>총 도비지원금의 10%(주관, 참여 기업)</p> <p>※ 대학, 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제외</p>		

※ 유형별 선정건수, 지원금액은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예정

3

지원 분야

구분	산업 분야
新 혁신 성장산업 미래분야	미래형자동차, 조선항공, 농건설기계, 재생에너지, 수소에너지, 탄소융복합소재, 바이오산업, 디지털산업, 이차전지, 방위산업

4

신청자격 ※ 지원자격 미충족시 지원제외 됨

□ 주관기관 : 최초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(법인 및 개인사업자)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

① 도내 창업(기술)보육센터* 입주기업이거나, 도내에 공장**, 본사, 사업장,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 (5가지 요건중 1가지 이상 충족시 가능)

* 기업 단독 수행일 경우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소재한 기업만 가능함

* 중소기업진흥공단, 대학, 국공립·정부출연 연구기관,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·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

**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공장

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

※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,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, 미 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

- 단, 기업 단독 추진방식은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 제외)를 전북특별자치도내에 보유한 기업만 가능

□ 참여기관 : 최초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정부출연(연), 유관 연구기관, 대학 및 기업* 등

* 기 업 :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(법인 및 개인사업자)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장(본사, 공장, 사업장, 연구소 중 1개 이상)을 보유한 기업

□ (자유공모형, 구매조건부, 투자유치형 - 주관 및 참여) 신청 조건

○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*만 주관 및 참여기업으로 신청이 가능

* 개인사업자, 1년미만 창업기업도 포함

□ (구매조건부) 신청 조건 및 우대사항

- 구매조건부 신청 시 지원금 이상 금액의 구매확약서 필수 제출
- 구매확약서로 인정 가능한 증빙 : 매매계약서(sales contract), 주문서 (Purchase order), 개발계약서(Development contract), 판매계약서 (Sales note), 각서송장(Memorandum)
- 외국어로 된 구매확약서는 번역본 첨부
- 단순 용역, 기성품 및 기개발완료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납품 등은 제외
- 구매확약서 필수 기재사항 : 구매금액, 구매시한,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명기,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서로서 법인 대표자간 계약 체결서 * 상기 필수 기재사항 마다 제시 미흡으로 서류 탈락

증빙서류	세부내용
구매확약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발품목명, 개발품목의 사양,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,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• 과제명, 개발기간, 수요처 담당자, 구매예정 품목·규격·수량·금액·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(직인 포함, 서명 불가) <p>※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(단,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) ※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(25.9.8.)이어야 함</p>

- 구매조건부 수요처 조건
- 대·중견기업
- 중소기업 :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,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,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(bb-) 이상인 기업

구분	내용	비고
업종	제한없음	중소기업확인서(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) 등 *발급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smba.go.kr)
업력	창업 5년 초과	2021년 3월이전 창업
매출액	300억원 이상	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
신용등급	BB(bb-) 이상	한국기업데이터(크레타) 등급 기준 등

-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
- 해외(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A~ E 등급 기업)

□ (투자유치형) 신청 조건

- 2023.01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도내 기초지자체와 투자유치 계약 또는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 기업으로 신청금액 이상 투자 기업

□ 우대 가점 사항(택 1)

- 2025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 수혜기업
- 공고일 현재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소 기업(종료 및 취소 기업 제외)
-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형 ILP(Industrial Liaison Program)서비스 직접 수혜 기업 및 기술이전 받은 기업

5

지원제외 대상

□ 도내 중소기업의 R&D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를 제한함

- ①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(돋움·도약·선도)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제외 (졸업기업 가능)
- ② 본 사업으로 2015년 이후 3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선정·지원받은 기업 지원제외 (졸업제 적용)
- ③ 본 사업 '25년도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되어,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 기업은 지원 제외(종료과제는 신청가능 - 25년 1차 과제는 신청가능)

□ 공고상 명시된 필수서류 미제출 및 유효기간 만료 또는 비공인 자료 제출한 경우 *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 / 제출 마감 후 별도 서류보완 불가능

□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최근 2년(2024년~2025년) 연속, 유동비율 50%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%(벤처투자유치 증빙이 가능한 CB, BW, RCPS는 부채에서 제외) 이상인 경우
(단,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월만 적용)

[지원가능여부 예시]

구 분	유동비율		부채비율		지원여부
	2024년	2025년	2024년	2025년	
A기업	49%	47%	300%	400%	X
B기업	55%	60%	550%	650%	X
C기업	20%	75%	600%	320%	O
D기업	100%	40%	400%	540%	O

-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단,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
 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- 부도, 휴·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
- 최초 공고일 기준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
 - 4대 보험 미가입시(등기 임원 예외)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경우 (연구책임과제 3개, 연구개발과제 5개) 참여를 제한함(3책 5공 적용)
-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6

신청 및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: 2026.04.01(수) ~ 2026.04.10(금) 16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)*최종제출완료 필수
 - 온라인 접수 : <http://rnd.jbtp.or.kr> (전북R&D종합정보시스템)

☞ 신청방법 : rnd.jbtp.or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광고 → 신청광고 목록 → 해당 공고 접수 클릭·신청하기 →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(최종제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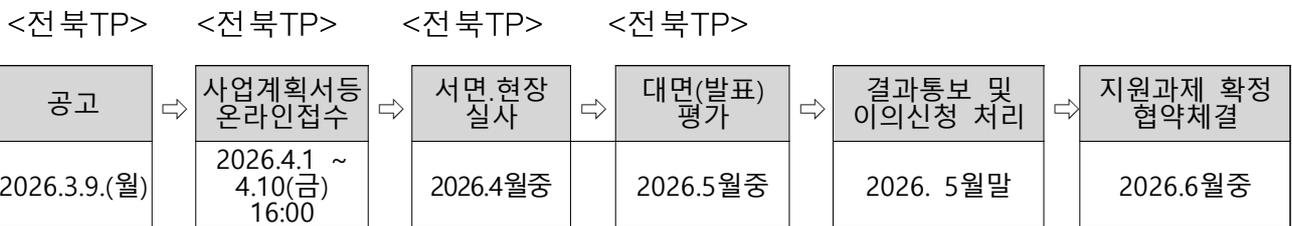
※ 홈페이지 회원가입/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

※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[전북테크노파크 R&D관리 홈페이지] 참조

※ 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최종제출완료 요망
(접수 가능용량 100MB)

※ 접수 마감시간(2026. 4. 10.(금) 16:00) 경과시 접수 불가하며, 16:00까지 제출한 자료로 선정평가추진

□ 평가절차 및 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□ 필수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, 제출서류 등 <http://rnd.jbtp.or.kr> 에서 다운로드
- 홈페이지 → 지역R&D 공고에서 확인
- 제출시 각 파일별로 스캔(PDF파일 변환)하여 파일별 연번 및 파일명
기재 후 압축하여 온라인 접수시(<http://rnd.jbtp.or.kr>) 업로드
- 필수 제출 서류 누락 및 지정 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탈락
- 모든 스캔 파일은 PDF로 통일함(JPG 등 기타 형식 불가)
- 각각의 제출서류는 개별 파일로 필수 제출
(별도 제출 없이 계획서내 첨부시 미제출로 간주함)

N O	제출서류	자유 공모형	구매 조건부	투자 유치형	비고
1	(양식 1) 사업계획서 2부(한글원본 1부, PDF 파일 1부)	○	○	○	주관
2	(양식 1-1) 불임자료 각 1부(PDF파일)	○	○	○	주관, 참여
3	(구매조건부 신청시 필수) (양식1-2)구매조건부 구매계약 개요서 필수제출서류 : 구매계약서(자유양식)***	-	○	-	주관

No	제출서류	자유 공모형	구매 조건부	투자 유치형	비고
4	(투자유치형 신청시 필수) (양식1-3) 투자유치 개요서 필수제출서류 : 투자유치 확인서류(계약서 또는 MOU) 및 투자증빙자료	-	-	○	주관
5	최근 2년간('24~' 25) 표준 재무재표 각1부* ※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/ 홈텍스 발행 자료만 인정함	○	○	○	주관
6	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** ※ 공장 미등록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	○	○	○	주관 참여
7	(공고일 기준)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※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내 서류 /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	○	○	○	주관 참여
8	(신청일 기준)중소기업 확인서(중소벤처24 발행) ※ 신청일 기준 유효 기간 내 서류 /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	○	○	○	주관 참여
9	(공고일 기준)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사본 1부 ※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	○	○	○	주관 참여
10	(단독신청시 필수)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1부 *도내에 연구소가 소재하여야 함 (참여기관 있을 경우)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부(설립예정일 경우 추후 제출)	○	○	○	주관
11	(가점대상) 가점 관련 사항 증빙자료 1부.	○	○	○	주관

* 표준재무제표는 홈텍스 발행 자료만 인정함 / '25년도 재무제표가 홈텍스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이 날인한 재무제표 제출

* 본사가 도외일 경우, 입주계약서,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함

*** 구매확약서(P/O) 필수 기재사항 : 구매금액, 구매시한,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명기,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서로서 법인 대표자간 계약 체결서(서명 불가, 직인 필수)

* 상기 제시된 필수 서류 누락 및 조건에 맞지않는 자료 제출시 서류 탈락

관련문의 :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단 R&D지원팀

(☎ 063-260-9331, 9333 ~ 9334 / e-mail : khchae@jbtp.or.kr)

7

(도비) 지원금 지원기준 등

지원금은 참여기업 유무, 기업유형 등에 따라 사업비의 80%이내로 하고,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0%이상을 원칙으로 함 (단, 기업 단독의 경우 민감부담 현금 비율 20%이상)

※ (예시) 도지원금 100백만원(80%), 민간부담금 25백만원(20%)인 경우, 민간부담 현금은 25백만원의 10%인 2.5백만원 이상 매칭 필수(현물 22.5백만원 이내)

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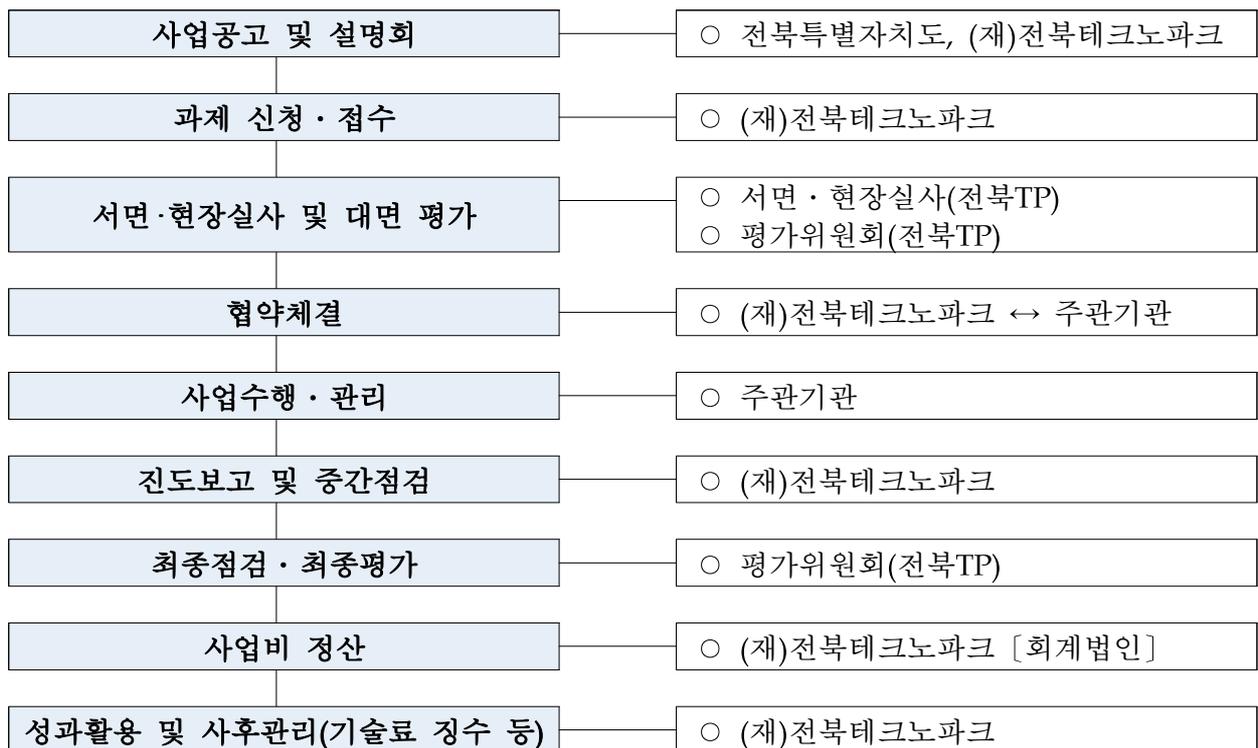
평가기준

□ 사업추진체계, 기술성, 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, 기여도 등

평가항목	세 부 항 목	평가지표
사업추진체계 (30)	추진체계의 적정성	- 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
	추진체계의 연구역량	- 사전준비과정 적정성 - 핵심기술 보유 여부 -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능력 및 역량
기술성·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 (50)	기술개발 차별성	- 기술개발 내용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
	사업계획의 적정성	-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-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의 구체성 -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해결 방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
	기술적 파급효과	- 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타당성 - 개발결과와 실용화·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- 개발품목의 매출 등 사업화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- 시장창출, 수출효과 등 파급 효과
기여도 (10)	지역기여도	- 지역산업(고용 및 매출액 등) 기여도
사업비 (10)	사업비편성	- 사업비 편성 적절성
가점(3)		우대가점 사항 참조

9

추진절차



- 신규고용 : 기업당 1명 이상 신규고용 의무
 - 최초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(또는 사업기간내) 신규채용 연구원(재입사인원 제외)에 대해 주관기관 현금인건비 최대 24.7백만원이내로 사업비(현금)에 산정 가능
 - ※ 협약 시 '신규인력채용(예정)확인서'를 제출하고, 실제 고용 시 참여인력변경 보고를 한 경우만 인건비 지원 가능
 - ※ 학력제한 없음(단, 현금 인건비 지급 연구원일 경우,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구노트에 성실히 기재해야 되며, 연구노트 불성실 작성 및 미작성시 인건비 전액 불인정)
 - ※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용시 인건비 지급불가
 -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은 1회에 한정함
 - 외국인 채용 : 주관 및 참여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참여인력으로 등재시 인건비 지급 불가. 단, 여비는 지급가능
- (공통) 반드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는 30% 이상, 주관기관 참여연구원은 10%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(현물 인건비)를 계상해야 함.
- 현물은 인건비로만 책정하되, 비영리 참여기관은 현물 미책정 가능
- 선정된 주관 및 참여기관은 연구노트 및 연구노트 작성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연구수행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.
 - ※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지 연구노트 작성 확인예정
- 연구과제의 정량목표는 추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.(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발생이 불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 설정 불가)
- '신규고용 의무조건' 불충족시, 최종평가에서 '보통'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없음('성실실패'이하로만 평가함)
- 구매조건부 경우, 최종평가 이후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과조사 시, 선정당시 제출한 구매확약서에 기재된 납품(계약)기한안에 매출성과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, 정부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-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"성공"으로 판정될 경우, 성공

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도출연금의 10%를 납부

* 현금 일시납 원칙,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
(기술료 납부 통지 후 1개월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% 감면)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)는 아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 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 - 이미 개발된 R&D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, 개발 목표 등을 인터넷 공시하는 것
-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연구책임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제도를 폐지함
 - 컨소시엄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만 구성
-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R&D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&D사업 공동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지원근거
 -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·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육성지원 조례,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·관리 규정
- 제출시 사업계획서는 **한글파일 원본과 스캔본 2부를 업로드**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파일명을 자료명과 일치시키고 모든 파일을 압축하여 업로드
- 온라인 제출 마감 후 수정 및 보완 불가함. 필수 서류 미제출 및 유효기간 종료, 비공인 서류 제출시 탈락

※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전북R&D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내

[참고 1] 사업 접수시 파일 정리 기준(필독)

-  1. (양식 1)사업계획서(기업명)
-  1. (양식 1)사업계획서(기업명)
-  2. (양식 1-1.)붙임자료(기업명)
-  3. (양식 1-2) (해당시 작성)구매조건부 구매계약 개요서 및 증빙자료(기업명)
-  4. (양식 1-3) (해당시 작성) 투자유치 개요서 및 증빙자료(기업명)
-  5.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(기업명)
-  6.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(기업명)
-  7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기업명)
-  8. 중소기업 확인서(기업명)
-  9. 4대보험가입증명서(기업명)
-  10. (단독신청시)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(기업명)
-  11. (가점대상일경우) 가점관련 증빙자료(기업명)

※ (유의사항)

- 1. 온라인 접수시 상기 파일순으로 압축파일을 사용하여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
- 2. 사업계획서는 한글본과 스캔본 필히 2부 제출하여야 함(누락시 탈락)
- 3.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필수서류 제출시 제시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.
- 4. 온라인으로 제출 마감일 이후 제출 완료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 및 수정 불가능함.
- 5. 필수 서류 미제출 및 유효기간 종료, 비공인 서류 제출시 탈락

[참고 2] 사업비 편성 기준

세 목	내 용
인건비	<p>□ 인건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 : 본 R&D과제를 통해 최초 공고일 6개월 (2025.. 10.10이후 채용)이내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업당 현금 인건비 24.7백만원 이내 산정이 가능함(지원금 0.9억당 1명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⇒ (신규인력) 현금인건비 한도 : 최대 24.7백만원 이내 ⇒ (기존인력) 현금인건비 한도 : 기업당 신규인력 인건비의 50% (신규인력 12.35백만원 + 기존인력 12.35백만원) ⇒ 신규+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한도는 24.7백만원을 넘을 수 없음 ⇒ 재입사 인력은 신규 인력으로 산정 불가함 ⇒ 선정 후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은 1회에 한정함 ⇒ 참여인력의 참여 여부 확인은 연구노트를 기준으로 하며 불성실 참여시 인건비 불인정 ○ 대학 및 출연연 :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한해 참여율을 100%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건비 계상 가능. 단,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은 인건비 현금계상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⇒ 현금인건비 한도 : 도지원금의 35% 이내 ○ 공통적용 : 급여총액에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하여 계상 <p>□ 학생연구원 인건비 (도지원금 35% 이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생연구원 인건비 : 참여율 100%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박사과정 : 3,0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- 석사과정 : 2,2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- 학사과정 : 1,3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
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,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 보수비 산정불가※범용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 산정 불가 ○ 영리기관인 경우, 단일 물품(장비, 재료, 시제품 등)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1,000만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/유사 또는 동일 물품으로 단가가 1천만원 미만이나 합계가 1천만원일 경우)에 이르는 장비, 시제품,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(협약 시 견적서 첨부 필요)

세 목	내 용
	<p>* 사업 선정평가 이후 장비 구입비 편성 불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약 및 재료 사용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,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구매예정내역 첨부 ○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불가하며,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(참여기관은 분석료 산정 불가함) ○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산정가능(참여기관 분석은 불인정) <p>- 접수조서, 구매물품 사진 구비 필수</p>
연구활동비	<p>□ 연구활동비 (도지원금 10%이내 산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여비 :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 여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비는 소속기관 자체기준에 의해 산정하며, 기준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(국외여비 불가)하되, 최종적으로 전담기관에서 기준을 결정함. ○ 전문가활용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(30만원/일 한도) - 자체 기준이 없을 경우 전북테크노파크 전문가활용비 산정 기준으로 지급 - 동일인에게 강사료 및 원고료 이중지급 불가 ○ 위탁정산수수료 : 회계법인의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로 주관기관에서 산정하며,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 [별표] 정산수수료 표준보수액 참조 ○ 사무용품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인쇄·복사 등 - 접수조서, 구매물품 사진 구비 필수(단순 문구 구입 금지) ○ 과제와 관련 있는 문헌구입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국내외 훈련비 등은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○ 교육·세미나·문헌구입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회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 경비는 불인정 - 회의 및 교육·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,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 ○ 회의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(참여기관 포함)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편성가능 - 식대 및 다과 : 30,000원 이내/인 X 참여인원 X 횟수 - 회의비 집행 증빙자료 필수 첨부(회의록, 서명록) <p>· (주관기관/참여기관) 전화요금,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산정불가</p>

세 목	내 용
연구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연구수당 편성불가 · 참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, 해당기관의 현금 인건비의 10% 이내 산정 가능
간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관공통운영경비 : 대학·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과제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(비영리기관만 산정 가능) ⇒ 참여기관 도비지원금의 5% 이내 ·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 : 해당연도에 본과제와 연관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(특허 출원 1건당 최대 1.5백만원 이내)
참여기관 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로 도비지원금의 40%를 초과 할 수 없음

【별표】 정산수수료 표준 보수액

○ 정산수수료 표준보수액

구 분(사업비 규모)	표준보수액(천원)
5천만원 미만	624
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,044
1억원 이상 2억원 미만	1,284
2억원 이상 3억원 미만	1,704
3억원 이상 5억원 미만	2,064
※VAT 포함 금액	

※ 사업비 규모의 산정은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(현금)의 합을 기준으로 함.
(현물은 포함되지 않음)

○ 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

참여기관 수	가산금
0개	가산금 없음
1개	수수료의 10%
2개 이상	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%씩 가산